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1월 22일, 김원이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의원)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산업계량의 개념 도입 및 지원체계 마련

개정안은 산업활동 과정에서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는 한편(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의2),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 및 활성화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삭 제>
<신 설>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신 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연구·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신 설>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

<신 설>	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1]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정단위,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및 측정기기의 교정 등 계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뿐 아니라 산업·과학 분야의 측정관리체계도 함께 운영되어 왔으나,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측정표준 및 측정 관련 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을 중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으로[2], 법정계량 관련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어 옴.

이러한 법체계 개편 이후 산업현장의 측정관리 및 교정 활동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측정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계량 관련 지원체계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3].

이에 개정안은 산업활동 과정에서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현행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사업 및 활성화 시책의 추진 근거와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계량에 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과정에서의 정밀측정이 제품 품질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됨에 따라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측정관리 역량

---

2)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 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 측정 표준 체계 중심의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산업현장의 측정관리, 교정, 지원체계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산업현장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임.

을 강화하고 산업계량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계량 관련 사업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교정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보급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도 지원센터의 평가·관리 또는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지정기관의 경우 지정취소, 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입법례[4]가 있는 점

---

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정밀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취약할 경우 제품의 정확도 및 품질 저하, 생산비용 증가 및 산업재해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법에 산업계량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측정기기 자율교정 및 계량측정 정책협의체 운영체계 정비

개정안은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안 제57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2(계량측정정책협의회) ①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②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40조[5]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측정기기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35조[6]에서는 자율교정 측정기기로 곡물수분측정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 고시인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에서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교정주기, 교정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5)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 주기
곡물수분측정기(벼를 제외한 곡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년

자율교정은 측정기기 사용자가 외부 공인교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측정기기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산업현장의 측정기기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교정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뿐만 아니라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기기의 기술 변화와 산업현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할 경우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측정기기 등을 보다 신속하게 자율교정 대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적시성과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규율대상의 범위 및 적용대상을 정하는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으로 규정하고, 기술적·전문적 사항이나 세부적인 집행기준 등은 고시·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는 어떠한 측정기기가 자율교정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의 측정기기 관리 및 교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기의 종류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향후 자율교정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측정기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관리기준 등을 고시로 일원화할 경우 기술 변화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개정안은 제57조의2를 신설하여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7]의 33개 법령[8]에서 다양한 계량기 및 측정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계는 미

7) 국토교통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보건복지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8) 자동차관리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지진관측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총포화약류법, 철도안전법,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소방시설법 등

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또한, 2021년 계량기 관리실태 조사 결과[9]에서도 일부 계량기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형식승인 및 검정 절차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된 바 있어,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다수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 분야의 기본 법률인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련 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10]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9)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3종 법령 계량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21년), 33% 관리규정 부재, 27% 형식승인·검정 절차 미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설명임.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대신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11]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존 국가표준심의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경우 위원회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면서도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

11)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